교직원 청렴의무 시행세칙

제 1조 【공정한 직무수행】
모든 교직원은 청렴의무 준수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,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2.07.01.>

제 2조 【향응·금품의 금지 및 제한】
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향응·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2.07.01.>

제3조 【인사관여·이권개입·알선·청탁행위의 금지 및 제한】
1.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2.07.01.>
2.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2.07.01.>
3.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2.07.01.>
4.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·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,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2.07.01.>

제 4조 【사적 이해관계의 신고】
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무관련자 또는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유치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직원이 유치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2.07.01.>

제 5조 【행동강령 위반의 제재 조치】
1. 교직원이 제29조(공정한 직무수행)부터 32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)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유치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7.01.>
2. 유치원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확인 한 후, 해당 교직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해야 한다. <신설 2022.07.01.>
3. 유치원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07.01.>
4. 유치원장은 위 규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

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7.01.>

제 6조 【그 밖의 필요사항】
1. 유치원장은 행동강령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7.01.>
2. 유치원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위 규칙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7.01.>
3. 그 밖에 교직원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7.01.>